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3
----------	------

발의연월일 : 2001. 12. 31.

발 의 자 : 이미경 · 정철기 · 임채정
송훈석 · 이재정 · 박양수
정범구 · 이창복 · 김정숙
권철현 · 정병국 · 전갑길
이종걸 · 허운나 · 장영달
김태홍 · 김희선 · 김화중
정세균 · 임종석 · 김경천
송석찬 · 이호웅 · 조배숙
강신성일 · 김영진 · 김원웅
배기운 · 이연숙의원
(29인)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 보존 · 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현행 제명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하여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함(제명).
- 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3조).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을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이들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비인간적인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日軍慰安婦生活安定支援審議委員會”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보호·지원의 내용)”을“(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醫療保護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중“日軍慰安婦生活安定支援審議委員會”를“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보호·지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중“이 法에 의한 適用對象者”를“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사업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4.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내·외 학예활동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적 자료라 함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5조중 “이 법의 適用 對象者”를 각각“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행한 결정·등록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 援法</p>	<p>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p>
<p>第1條(目的) 이 법은 日帝에 의하여 強制動員되어 日本軍慰安婦로서의 生活을 强要당한 자(이하 “日軍慰安 婦”라 한다)에 대하여 國家가 人道 主義情神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 고 지원함을 目的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이들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 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 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2條(適用對象者) 이 법은 日軍慰安 婦중 生存者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 하여 이 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 登録된 자에게 적용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 하여 강제동원되어 비인간적인 성 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 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 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로 결정·등록된 자를 말한다.
<p>第3條(決定 및 登録) ①이 법의 適用 對象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 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女性部長官 에게 登録을 申請하여야 한다.</p>	<p>第3條(결정 및 등록) ①생활지원대상 자가----- ----- -----.</p>

②女性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日軍慰安婦生活安定支援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 法의 適用對象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4條(보호·지원의 내용) ①女性部長官은 이 法의 適用對象者에 게 다음 各號의 保護 및 支援을 행한다.

1. (생 략)

2. 醫療保護法에 의한 醫療保護

3. (생 략)

②第1項의 保護 및 支援을 행함에 있어 이 法의 適用對象者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規定에 의한 수급권자 및 醫療保護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第3號의 生活安定支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

②-----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③ (현행과 같음)

第4條(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내용)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현행과 같음)

②-----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수급권자-----

-----.

③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條(賃貸住宅의 優先賃貸) 國家

第5條 (賃貸住宅의 優先賃貸) ---

· 地方自治團體 또는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한 大韓住宅公社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建設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는 경우에 이 法の 適用對象者중 住宅을 所有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賃貸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第6條(日軍慰安婦生活安定支援審議

第6條(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委員會) ①다음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女性部에 日軍慰安婦生活安定支援審議委員會(이하“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①-----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

1. 登錄申請事項에 대한 사실여부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2. 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보호·지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第7條(協調要請) 審議委員會는 이
법에 의한 適用對象者 여부를 審
 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申
 請人本人, 證人, 또는 參考人으로
 부터 證言 또는 陳述을 聽取하거
 나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
 하여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第10條(費用의 負擔) 第4條第1項第
 3號의 規定에 의한 生活安定支
 援金の 지급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第7條(協助要請)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

<삭제>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경
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
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4.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내·외 학예활동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적 자료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p><신 설></p> <p>第11條 (생 략)</p>	<p>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조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p>
--------------------------------------	--